

외국의 유괴보도 사례와 특수성

원우현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수성

유괴사건보도는 일반사건의 보도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괴된 사람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성급한 시간다툼으로 객관적 보도를 한다는 독자에 대한 일차적 서비스만으로는 유괴사건보도의 경우 법적, 윤리적인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거기다 유괴의 대상은 대부분 3세에서 12세의 어린이라는 점에서 인명존중의 보도저널리즘의 윤리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괴사건을 보도할 경우엔 다른 일반 사건보도 때보다 신중하게 다루고 피해당사자의 편익을 독자 일반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특수성이 일반 원칙에 우선하게 된다. 한마디로 어린이가 유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당연하게 다른 사건보도의 경우처럼 즉각 보도할 수 만은 없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공개수사가 피유괴자에게 불가피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수사를 수사기관이 스스로 결정하는 시점에 상응하여 언론기관은 동시에 보도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관례로 통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유괴보도가 일반 사건보도 경우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보도원칙이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것이며, 오히려 보도의 원칙은 이차적으로 밀리고 피유괴자의 원상회복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언론기관이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입장에서 협력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언론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라는 기본적 기능보다도 유괴된 어린이를 구하는 목전의 긴급한 사태가 더 긴급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범죄사실을 취급할 때도 지나치게 편정적이고 과장된 사건 전후의 보도는 일반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겠지만 범행수법을 직·간접적으로 교시하여 알려주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유괴사건의 경우는 더욱더 그 영향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난 1980년 주변을 떠들석하게 했던 효주양의 이원석도 처음에 효주양을 유괴했던 매석환의 범행수법을 신문을 보면서 연구했다고 진술한 사건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유괴사건보도는 유괴대상이 주로 어린이라는 점과 긴급한 생사기로의 구출작전이 절실하고 촉박하여 인간적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모험과 희비가 교차하고 유괴대가로 지불되어 거래하는 금전이 개입된 점, 유괴사건 자체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어느 구성원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그 귀추를 예견할 수 없는 기이하며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건이다. 따라서 뉴스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여러 학자들이 내세우는 어린이, 모험과 비애, 재산, 인간적 흥미, 괴이성, 이상성, 독자의 관심, 시의성, 근접성, 영향, 투쟁 등의 기본요소를 그 어느 사건보도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유괴사건의 보도는 언론이 주변에서 일어난 사실을 파헤치어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 보이게 한다는 저널리즘에 있어 호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국 언론의 상황하에서 일반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면 선정성이 농후해지는데, 유괴사건에는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유괴보도는 그 어느 사건보도보다도 법률적인 기준은 물론 사회윤리의 기준과 보도의 공정성 그리고 인간존중의 정신을 별도로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누구나 쉽게 동의하게 된다. 유괴사건보도는 독자의 본능적 흥미에 호소하려는 선정적 기호를 가미해서도 안되며, 유괴사건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 저널리즘의 윤리적 사명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다.

유괴보도는 사건의 현재적 진행과정에서 언론의 저널리즘 기능은 유괴대상의 인명보호라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 한 가족의 인명과 인권에 국한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이 그 본래의 활동을 협조적으로 유보 내지는 타협해나가는 타협해나가는 유괴사건의 사후적인 대책 마련과 사회적 평가에 그 어느 사건보다 연계적인 보도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유괴사건보도의 또 다른 특징은 유괴된 사람의 인적 관계나 주변에 관하여 필연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게 되고, 신문은 이를 추적해서 분석하고 보도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유괴사건은 대체로 기존의 사건을 경찰이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그 동기가 영리목적이나 원한관계 그리고 원한이 겹친 영리목적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보도과정이 개인의 사생활을 상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폭로저널리즘의 선정성이 나타나기가 쉽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유괴사건보도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대로 사건보도가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가 쉽고 독자의 알권리에 대한 긍정적 기능보다는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남기가 쉽다. 이렇게 사건 자체가 지니는 취약성때문에 유괴된 어린이나 성인의 주변인물들의 사생활권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전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법적·윤리적 기준이 요청되는 영역이다.

기술한 바대로 유괴사건은 진실보도와 공신력이라는 일반적 조건을 유괴당사자의 인명보호라는 차원에서 시한부적인 유보를 감수해야 하고, 독자의 알권리와 보도의 윤리기준의 일반적 제한성을 사건의 해결이라는 사후적 치유로 정당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상세하게 사후적으로 해명이나 평가할 의무를 지닌다.

유괴보도의 경우는 진실한 보도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간화해서도 안되지만 유괴대상자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보도의 균형과 공정성의 논거를 위주로 보도의 책임과 의무를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일반 사건보도의 진실보도 조건을 그대로 따라 유괴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 원칙을 사건해결후로 취급하는 시간상의 편익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보도이고,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유괴사건의 경우도 진실보도를 위한 기준(한국언론연구원 편, 언론인의 직업윤리, p.99)으로서 한국신문윤리강령도 「철저」와 「정확」을 기하고 중대한 오보가 있을 때는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된다. 그 실천요강으로 보도와 평론이 엄격히 분리되고, 집필자의 이름을 밝힘이 없이 개인의 의견을 보도에 삽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미확인의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때에는 미확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과대하게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의 원칙성명도 이 사안에 관하여는 「뉴스의 내용이 정확하고, 편견에 사로 잡히지 않고, 문맥에 맞아야 하며 모든 편의 입장이 공평하게 고루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미국 전문언론인협회(SDX)의 윤리강령은 「진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밝히고 보도에 있어서는 객관성, 정확성, 철저함을 강조하고 보도와 의견을 구별하여 뉴스보도에는 일체의 의견이나 편견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어떤 쟁점이 있을 때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의 기준과 관련하여 유괴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이 제척될 사유가 원칙적으로 상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의 기술적인 편익을 위하여 이 원칙이 변용되거나 중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협조차원에서 이를 기술적으로만 처리한다면 신문의 객관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의 신문윤리강령은 독립성의 장에서 신문이 정치, 경제, 사회적 편견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동강령의 실천요강도 독립성에 관한 규정에서 보도나 평론이 내외로부터의 여러가지 압력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하고 기사의 작성등에 있어서도 정치상의 선입견이나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시키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대목과도 수사진행과정에 유괴보도가 따르기만 하는 행위는 서로 상충을 나타낸다. 그러나 유괴사건이 각종 범죄 중에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이고, 그 중 어린 생명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어린이 유괴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인류공동의 적으로 개개의 유괴사건마다 그 해결을 위하여 절차상의 편익을 제공해도 마땅하다고 그 타당성을 논거할 수 있다 유괴사건 보도는 사건보도의 균형과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유괴사건의 핵심인 유괴대상자의 원상회복을 유괴범의 처벌이나 그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행위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에 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론기관이 균형되고 공정하게 사건이나 입장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유괴사건보도의 경우도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보도의 균형이란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입장뿐만 아니라 뉴스기사 전체의 역점이나 완전도에서 균형이 잡힌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언론연구원 편, 상계서, p.103) 예컨대 균형과 공정성에 관한 워싱턴 포스트의 행동기준과 윤리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어떤 중요성이나 의미를 지닌 사실을 내버린다면 기사는 공평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은 완전성을 포함한다. ② 중요한 사실을 때고 기본적으로 별 상관이 없는 정보를 넣으면 그 기사는 공평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은 관계성도 포함한다. ③ 독자를 의식적 이든 무의식적이든 오도하거나 기만한다면 그것은 공평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은 정직성을 포함한다. ④ 만약 기자가 「거부된」 이라든가 「불구하고」, 「인정한다」 는 등의 교묘한 용어로 그 뒤에 숨은 편견이나 감정을 숨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공평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은 화려함보다 솔직함을 요구한다. 이 경우도 유괴사건보도가 인명구출을 위하여 보도의 균형과 공정을 유지하면서 보도의 일반원칙을 유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악질적 범죄행위에 관한 언론인의 양심과 정직성 그리고 솔직한

자기표현이 일반보도의 균형과 공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약취 및 유괴의 법적 고찰

지금까지 유괴보도가 저널리즘의 일반원칙과 그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하는가를 살폈다. 여기서는 유괴보도의 법적 윤리적 측면을 살피려고 한다. 세계 각국은 유괴를 각종 범죄 중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로 간주하여 나라마다 유괴범에 대한 엄격주의를 채택한다. 유괴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범의 경우 미국의 경우엔 1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고, 프랑스는 10년 이상 무기징역, 브라질은 8년 이상 무기징역(사형이 폐지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이 3년 이상 무기징역 등의 예를 보더라도 모두 중형으로 엄벌하고 있고 과거 나치독일에서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가 1953년 폐지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1973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유괴범을 최고 사형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84)

유괴는 법률적으로 약취 및 유인의 죄로 설명된다. 유괴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약취·유인이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내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 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는 것이며,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그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강구진, 형법학강의각론 1, 박영사, 1984)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기망은 허위의 사실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사실적 지배하에 둔다는 것은 이전에 사실적 지배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새로이 이를 획득하는 경우는 물론 현재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불법하게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강구진, 형법학강의 각론 1, 박영사, 1984)

약취와 유인의 차이는 전자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임에 대하여, 후자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를 이용하는데 그 핵심이 있으며, 양행위가 병합되어 실행된 경우에는 약취·유인의 범죄가 성립된다. 약취·유인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폭행·협박·기망·유혹은 반드시 피인취자인 본인에게 대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없고, 피인취자의 보호자와 같은 제 3자에게 행하여져 제 3자를 이용하여 약취·유인하는 경우도 본죄에 해당된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장소적 이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약취와 유인의 죄에 있어서는 장소적 이전이 그 본질적 요소이며,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귀환을 곤란하게 하고 보호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장소적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보호감독자에 대한 폭행·협박·기망·유혹 등에 의하여 그를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함으로써 피취인자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에서 본 것처럼 현재 적법하게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장소변경없이 불법하게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장소적 이전을 반드시 요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 타당하다. 이 죄의 성질에 관하여는 사람을 자기 또는 제 3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실행행위가 종료되어 기수가 되며, 그 후 위법상태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자기 또는 제 3 자의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실행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죄는 상태범이 라는 설과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고 있는 동안 피인취자의 자유의 침해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동안 범죄의 실행은 계속 행하여지고 있다는 계속범설이 대립한다. 그러나 본죄의 본질은 피인취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고 함으로 계속범설이 타당하다. 다만 약취·유인한 자가 피인취자를 계속하여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에는 약취·유인죄 외에 감금죄를 구성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행위자에게 객체가 미성년자라는 인식과 그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실력적 지배하로 옮긴다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며, 그 동기와 목적은 불문이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약취·유인하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된다.(강구진, 상계서, p.160) 구법은 약취·유인의 죄를 비교적 가볍게 벌하였으나 현행법은 일본형법가안의 영향으로 그 형기를 인상하고 있다. 약취·유인의 죄에 있어서는 특히 일본형법가안의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292 조가 약취·유인에 대한 대조행위를 규정한 것 등은 입법론상 논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규정을 일본의 예와 비교해 보면 (유기천, 형법학 각론 상, 일조각, 1985, p.107) 다음과 같다.

<제 287 조> 일본형법가안의 376 조와 동일하다.

구법이 미성년자의 인취죄를 3 개월 이상 5 년 이하로 벌하던 것을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단한다.

<제 288 조> 제 1 항은 일본형법가안 377 조와 동일하고, 제 2 항은 신설한 것이다 제 3 항은 일본형법가안 378 조의 형기가 3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 년으로 인하한 것이다.

<제 289 조>제 1 항은 일본형법가안 379 조와 같고, 일본형법가안은 「거주국외」라고 한 것을 현행법은 「국외」에 이송할 목적이라고 변경한 것이 다를 뿐이다. 제 2 항은 일본형법가안 380 조가 5 년 이상으로 한 것을 3 년 이상으로 고친 것이다. 제 3 항은 일본형법가안이 상습범을 벌하지 않았으나, 본조의 경우에는 상습범을 벌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 290 조> 일본형법가안 381 조와 동일하다.

<제 291 조> 일본형법가안 382 조가 7 년 이하로 한 것을 5 년 이하로 고쳤다.

<제 292 조> 일본형법가안 354 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대조한 자의 책임을 무겁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상습범만을 가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일본형법가안 304 조를 채택하지 않고, 그 기본적 구성요건이 라고 볼 수 있는 292 조의 상습범만을 무겁게 벌하고 있다. 따라서 그 형기에 있어서도 일본형법가안 385 조가 2 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법 293 조는 2 년 이상 10 년 이하라고 하여 그 형기를 다소 낮추고 있는 것이다.

<제 294 조> 일본형법가안 381 조와 같다.

<제 295 조> 이는 현행법이 신설한 것이다.

<제 296 조> 일본형법가안 381 조와 동일하다.

유괴보도에 관한 일본사례

일본은 1946년 7월 23일 제정하여 1955년 5월 15일 보완한 일본신문협회가 그 지도정신으로 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기준 삼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성의를 다하여 윤리적인 품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강령을 관철하는 정신 즉 자유·책임·공정·품위 등은 기자의 언동을 규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신문에 관계하는 종사자에게 전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권장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 내용은 신문의 자유, 보도평론의 한계, 평론의 태도, 공정, 관용, 지도, 책임, 금지, 품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그리고 1948년 3월 16일 신문협회의 편집권 성명도 그 내용에서 편집권의 내용, 편집권의 행사자, 편집권의 확보 등에 관하여 명기하고 있으며, 1949년 이래로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는 여러 차례 기자클럽에 관한 방침 및 통일적 해석을 제시하여 전국의 기자클럽이 이를 근거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언론계의 협조를 구해왔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언론인의 자질과 보도태도에 관한 직업윤리적인 지침을 마련했으나 여기서는 유괴사건보도와 관련한 「유괴보도협정」에 나타난 보도기준을 중심으로 역사적 전개과정과 일반사례를 중심으로 살피려고 한다.

유괴보도협정의 역사와 문제점

일본의 경우도 경찰의 인명구조를 목표하는 수사진전과 언론계의 보도준칙을 서로 합의할 필요성이 반복되어 신문편집위원회가 유괴보도 방침을 정하여 경찰책임자와 서로 사건진전을 협의하는 제도적 기틀이 일본 특유의 역사적 배경에 맞게 마련되었다. (일본신문협회 간, 「신문연구」, 1980, 6월호, 임리웅 투고)

유괴보도협정의 발단과 전개과정

「아수군 사건」의 범인 자백이 발단이 되어서 유괴보도협정의 승인이 생겼다. 실은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가 「유괴보도방침」과 부칙(부기)을 정하고 이를 경찰청 장관등과 서로 양해해야만 하는 「확인사항」으로 서로 합의한 지도 지난 1980년까지만해도 10년이 지났다. 그 기간 중 이 유괴보도방침에 의하여 「유괴보도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된 사건이 대략 30건 정도인데, 각 신문사간에 협의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하면, 지난 10년간 약 50건 이상이나 유괴보도협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어 왔다. 그중 지난 1980년까지 30여건만 보도협정의 성립경과 및 운용실태를 새삼 회고해보더라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원활하게 실천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 유괴사건 발생경우 수사당국과 신문사간이든, 각 신문사간이든 상충되는 문제가 상존하였다. 이와 같은 실행상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유괴보도협정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기본정신에 따라서 개별적 사건마다 해결에 공헌해 왔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난 1980년 3월 일본 장야에서 발생한 「유미자씨 유괴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1~2년간 발생한 각지의 유괴사건으로 유괴보도협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를 보고 일부에서는 유괴보도협정 그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 협정제도가 유괴사건에 기여한 실적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의 유괴보도협정은 기술한 대로 언론의 취재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권리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법으로 피유괴자의 인명을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일시적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유괴보도협정의 근본취지나 의의는 언론기관과 경찰당국은 물론 일반국민까지도 널리 인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셈이다.

특히 장야의 유괴사건의 보도협정이 지금까지 일반 언론이 무관심했던 유괴보도협정의 실질적 내용을 사회에 부각시키어 일단의 관심과 파문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 사건은 1960년 6월에 편집위원회가 정한 「유괴보도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례다. 이 「유괴보도의 방침」은 그 당시 「사람의 생사에 관한 뉴스의 취급은 중대하기 때문에 인질을 붙잡고 돈을 빼앗는 범죄의 경우는 미리 수사당국과 언론기관이 협의하여 일반보도와 달리 유괴사건보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유괴보도방침은 1970년까지는 10년 동안 실효를 거두었고 그 후 1970년에 그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절차에 따라서 유괴사건보도방침이 1960년 이후 1970년까지를 전기로 분류한다면, 1970년부터 오늘까지를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년대 일본 신문역사상 처음으로 유괴보도방침이 마련된 계기는 1960년 5월 동경에서 발생한 「아수군 유괴살인사건」의 보도에서 비롯되었다. 당시는 유괴범죄사건에 관한 보도기준이 전무해서 사건 발생부터 신속성·사실성에 입각한 취재보도 경쟁이 치열했다. 이 사건에서 유괴된 「아수군」의 가족이나 수사당국이 피유괴의 인명보호를 위해서 그 비밀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피해자측과 친분이 있는 기자는 물론 수사당국의 수사착수로 인하여 여러 신문·방송사에 유괴된 사실이 알려지게 될 상황이었다. 그 당시 각 언론사는 물론이고, 경찰청내 클럽에 상주하는 기자를 통해서 동 사건의 취재보도를 자숙하도록 요청했고 언론기관도 유괴사건보도 중지 신청을 충분히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찰라적인 시차때문에 그대로 보도될 수 밖에 없었다. 사후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동 사건의 범인은 5월 16일 유괴하여 5월 17일에 살해하였는데, 상해동인이 바로 5월 17일 저녁에 자신이 저지른 사건이 크게 크게 보도된 것에 심리적으로 초조하게 되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일본도 유괴사건보도의 경우는 사건보도저널리즘의 일반원칙이 피해자나 수사당국의 인명보호 전략과정에서는 유보되거나 지연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영리유괴에 한정된 60년의 협정

그 당시 재경사회부장회는 유괴사건의 보도형태에 의문을 품고 2회에 걸쳐 의견을 이미 교환했으며, 그 후 다음사항을 명백하게 했다. 첫째는 5월 23일 동회합에서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인명에 관한 문제이므로 언론이 이를 보도할 때는 인명존중을 우선한다는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보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그 후 두번째로 6월 3일에는 당시 경찰청 신정이란 형사부장과 야전 수사 1과장을 불러서 구체적인 취급방침을 서로 협의하였다. 이 회합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보고서 내용이 바로 20년 이상이 지난 오늘의 유괴사건보도협정에 관한 문제점을 대부분 이미 지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언론기관의 유괴범죄에 관한 취재보도의 경우 중 유괴사건의 경우 「신문이나 언론기관이라고 해도 인간의 생명과 취재경쟁의 자유를 교환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언론기관의 자숙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둘째 취재보도를 언론이 신중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수사당국의 취재보도과정에서의 협력이 필요불가결하여 취재, 자체를 중단할 경우엔 경찰로부터 「모든 관련 자료를 받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 그밖에 동회합에서 「유괴사건 취재보도는 수사당국과 협력하는 편이 낫지만 사건 전모를 취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다」거나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히 준수하려고 작심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사후의 사건처리로 발표내용이나 사후처리나 취재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유괴사건이라도 어느 경우엔 피해자측에서 오히려 신문에 상세히 기록하길 원하는 부문도 있기 때문에 보도의 잠정적 유보는 경우에 따라(case by case) 수사당국과 언론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언론기관측에서 나왔다.

언론기관의 의견에 수사당국 참석자인 신정 형사부장등은 경찰이 보도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질을 붙잡아 그 생명이 위험하다고 사료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 수사기밀을 눈치채지 않도록 보도를 자제해주시기를 요망했다. 유괴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잠정적인 보도기능의 유보에 관한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 가는 「길어도 1 주일에서 10 일 정도가 최대한의 기간」이라고 수사당국의 입장이 제시되었으며, 「장기간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한하면 언론의 희생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신문사측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선에서 항상 협정을 맺고자 한다. 전후 유괴사건의 경우 1 주일이면 충분하고 더 장기화할 경우 서로 상담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괴보도의 방침의 계기가 된 첫번째 회동의 기록을 지나치게 자세히 인용한 감은 있으나, 이 논의의 결론이 편집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소속 가맹신문사의 지침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었는데, 1960년에 제정된 이 방침은 영리유괴사건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길전군 사건」 보도의 여파

유괴보도협정의 전기인 1960년~1970년 10년간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1963년 3월에 발생하여 1965년 7월 불행하게 종지부를 찍은 「길전군 유괴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길전군이 유괴된 3월 31일에서 10일이 경과한 4월 10일 경찰청의 신청으로 「당국의 발표 외의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재경사회부장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는 4월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 신문협회에 가맹한 각 언론기관이 이를 준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4월 16일 경시청은 동사회부장회에 대해 10일 이후의 수사상황을 설명하고 중간발표로 일반의 협력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동부장회는 경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길전군 생사가 판명될 때까지 4월 10일에 체결한 협정은 존속하나 경찰청은 19일에 수사경과를 중간발표한다」는 중간방침을 결정했다. 18일 중간발표에 대해 동사회부장회의와 경찰청은 서로 타협하여 19일엔 경찰청에서 중간발표가 있었다. 23일 재경사회부장회는 회합을 갖고 상황변화에 따라 4월 10일 협정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고 수정하여 존속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말하자면 1960년 6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유괴보도사건취급방침」을 존중하여 길전군의 생사가 판명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① 생사에 관한 예측을 하지 않는다. ② 구출에 지장을 미치는 보도는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협정체결은 관행화되었고, 같은 기준에서 1963년 9월에는(그후

1970 년의 새로운 「방침」과 구방침이 모두 포함된 내용) 「공갈사건의 보도취급방침」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새로운 보도지침결정과 취재보도상의 문제

새로운 방침의 골격은 과거에 「영리유괴일변도로 유괴보도방침이 정해진 내용이 그 사건이 보도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까지 그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새로운 보도지침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언론과 수사당국 쌍방간의 확인사항을 첨가함으로써 유괴사건취급지침의 해석을 둘러싸고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절차상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인명의 위협을 유괴사건의 경우 미연에 방지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언론기관의 보도범위는 확대시키는 동시에 보도의 방향은 개략적인 데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새로운 유괴보도지침은 인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미리 세부적인 배려를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1969 년 11 월에서 3 개월간 편집위원회에서는 기존보도방침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1970 년 2 월에 동위원회에서 새 「방침」으로 정식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적인 수속절차와 운영을 「부」로 정했다. 「부기」와 관련된 세칙사항은 물론이고, 언론기관은 유괴보도방침과 「부기」가 수사당국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경찰측에 신청하였다. 경찰측도 이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한 점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새로운 방침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되기까지 인명최우선의 원칙은 당연히 사료되지만 취재보도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해서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1960 년 보도지침 제정후 약 30 여건의 유괴사건에 이 지침이 보도내용에 적용되었고, 1979 년까지 해마다 1-2 건 정도의 비율이었다. 그동안 1976 년 「해설」이 작성되어 「방침」, 「부기」에 이은 유괴사건보도기준의 운영세칙의 해석의 통일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것은 1976 년 2 월 애완현 대주사의 「사뜨끼 씨 유괴살인사건」의 보도협정이었다. 물론 1970 년부터 1976 년까지 유괴사건협정의 분쟁이 그치지 않았으나 협정기간중 사건취재를 하거나(1974 년 8 월 동경 진유자씨 유괴살인사건), 언론기관의 수사경과 발표가 늦어지거나(1974 년 10 월 동경 미루자씨 유괴살인사건), 언론기관이나 수사당국 모두 보도협정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이 발견되었다. 그밖에 1982 년 2 월 13 일 광도현 복산시에서 발생한 학동유괴살인사건이나 그 전에 해석이 통일되지 않았던 경우로 「사뜨끼 씨 사건」의 케이스 등등이 있으나 여기서 상론은 생략한다.

유괴사건보도협정의 문제점

유괴보도협정이 그 전기와 후기를 통하여 수사당국과 언론기관 사이의 분쟁이 생기고, 이를 수락하더라도 편집위원회에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괴사건보도협정의 운영을 실효성있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긴요한 수사당국의 이해와 협력이 충분치 못해 왔다. 이 점에 관하여 재삼 음미해 보면, ① 유괴보도협정체결의 신청이 수사당국의 편의를 위해 안이하게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가, ② 협정성립의 전제조건인 수사상황의 발표가 상세하지 않거나 적당히 지연되고 있지 않는가, 특히 피해자의 인권, 프라이버시, 공판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발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한다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사진행경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살펴보아야 하지 않는가, ③ 유괴사건으로 판정되기까지 수사당국이 예상되는 수사를 행하여 그 사실을 언론기관측에 밝히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는가, ④ 수사당국이 유괴사건이기 때문에 판정하기에 곤란을 느낄 경우 유괴보도의 협정체결을 신청하는 대신 단순하게 취재보도의 자숙만을 요청할 위험은 없는가, ⑤ 협정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어도 수사상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언론기관측과의 협의를 오히려 연기하는 일은 없는가, ⑥ 사건 발생지의 경찰본부 발표와 경찰청의 발표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거나 내용면에서 서로 틀리거나 하는 일은 없는가, ⑦ 유괴사건보도협정이 언론기관간의 자주적인 협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수사당국과 언론기관간에 이루어진 협정이라고 간주하든지 이것이 신문협회(민간방송연맹을 포함) 가맹 각 보도기관 이외에도 적용된다는 오해는 없는가 등의 각 사항마다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2) 유괴사건보도협정을 체결하는 언론기관의 기자들간에 기본적으로 동협정을 이해하는 데 결함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기준의 해석이 통일되지 않았다. 협정기간중의 취재활동이나 취재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가 분명치 않고, 사건발생지에서 체결된 협정이라도 이는 신문협회 가맹회원사간에 협정이 되어서 전국 각지의 보도기관이 준수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었지 않는가 등의 기준이 통일되어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3) 현행의 유괴사건보호협정제도하에서도 유괴범죄의 양태가 복잡해서 현재로서는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괴사건의 개별적 성격에 따라 협정내용 및 그 운영을 탄력성있게 개선하고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① 사건에 따라서 「취재보도를 일체하지 않는다」는 협정내용 전부를 준수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럴 경우 부분협정도 가능하지 않는가. ② 사건이 미해결인 채 장기화될 경우 언론기관마다 부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경찰측과 해제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32년 첫 대서양 횡단비행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찰스 A 린드버그의 어린 아들들 유괴하여 몸값으로 5만달러를 받고도 살해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 세상에 충격을 주었고 사형제도가 생겼다. 196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호텔방에서 가수 겸 배우인 프랭크 시내트라 의외아들이 유괴되어 24만달러를 지불하고 풀려났었다. 또 1967년 4월에는 캘리포니아의 금융회사 사장 허버트 영 씨의 아들 케네드 영 군(당시 11세)이 몸값 25만달러를 치르고 유괴범에게서 풀려났다. 1974년 2월에는 극좌단체인 공생해방군(SLA)에 납치됐다가 5범강도만에 가담하여 은행을 습격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신문왕 랜돌프 허스트 씨의 딸 피트리셔 허스트 양(당시 19세) 사건이 온 미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다. (동아일보 1980. 12. 16. 6면)

미국의 경우도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범의 경우 1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유괴사건보도에 관한 수사당국과 언론기관의 사전협조로 인명구출을 단기적 지상목표로 저널리즘의 원칙이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 경우 형법 및 프라이버시보호법에 나타만 보도기준이나 신문사 자체의 보도기준 등을 적용하여 수정헌법 제 1 조의 정신을 근간으로 기술적인 변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할 뿐이다. 미국의 경우 보도의 자체적 준칙으로 1922년 윤리강령(Canons of Journalism)과 대체하여 1975년 10월 23일 ASNE 이사회에서 채택된 미국 신문편집인협회 원칙성명(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Statement of Principles)을 최고의 언론인의 윤리적·직업적인 행동을 권장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언론연구원 편, 언론인의 직업윤리, p.384)이 내용은 언론인의 책임과 프레스의 자유, 독립, 진실과 정확성, 불편부당, 공정과 정확 등을 골자로 유괴보도를 포함한 모든 보도에 지침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준거가 유괴보도의 경우 어떻게 잠정적으로 제한 내지 유보할 수 있는가는 이미 기술한 유괴사건보도의 특수성과 유보에 관한 논거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973년 전국대회에서 채택된 직업저널리스트협회 시그마 델타 카이 윤리강령(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Sigma Delta Chi, Code of Ethics)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중 공정에 관한 항목 중에 뉴스 미디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침해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나 미디어는 악덕행위나 범죄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 건전하지 못 한 호기심에 영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유괴보도의 준칙으로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을 경우 특히 신속한 보도를 유언하는 설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한국 유괴사건보도에 관하여

지금까지 기술한 대로 유괴사건의 대상인 인명을 구출한다는 긴박한 상황적 특수성이 고려되어 언론기관이나 수사당국은 그 본래의 기능을 자제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윤리적·법적 기준을 준수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유괴사건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보도기준과 시행세칙은 수사당국과의 보도협정 체결에 근거한다고 해도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물론 「사전검열」의 통제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유괴사건의 보도의 경우 그 사건이 그대로 보도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사건은, 언론기관이나 수사당국이나 친지로부터 사건진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후에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보도기관이 수사당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그 사건의 내용을 일단 공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보도를 자제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사건을 비밀로 하여 수사할 수도 있다.

보도를 자제하는 경우 보도활동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그 방법이나 범위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 이 글에서 일본이나 미국의 예에서 살핀 대로 그 역사적 배경과 구체적 사건해결에 적절한 조치는 우리나라 유괴사건의 동기와 형태 등에 상응하여 새로운 이론과 현실적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유괴사건의 성격과 경과 등을 판단하거나 피해자의 안전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언론기관과 수사당국이 보도내용 및 절차상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결국은 인명의 구제에 관한 사항이면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유괴사건에 관한 취재나 보도활동을 삼가는 것이 윤리적 판단이다 취재·보도활동을 잠정적으로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취재·보도활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오히려 사건의 실체와 수사진행이 보도기관의

주관에 따라 잘못 투영되어서 현장의 혼란과 유괴범의 오판을 유도할 수도 있다 단지 유괴사건의 성격상 일부 보도허용도 피해자의 생명보호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사료될 경우는 이를 윤리적 판단에서 묵인할 수 있다.

유괴보도의 완전통제이건 부분통제이건 간에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언론의 자유, 민주적 질서의 중핵적인 역할을 감안하여 수사상의 편의로 유괴보도사건의 잠정적 유보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유괴사건보도의 유보가 피해자의 생명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협의로 해석되어야 하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예컨대 보도기관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유괴사건의 통보를 받고 보도의 유보의 요청을 받더라도 언론기관이 독자적인 판단에서 보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구두로 유괴사건에 대처하는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의 대표자와 수사당국이 보도협정을 체결하든지, 「가협정」이라도 맺어서 그 내용과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준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론기관이 편집인협회나 기자협회, 신문협회 등이 동시에 같은 기준에서 수사당국의 협조의뢰에 응해야지 각 언론사 나름대로 보도협정의 준수 여부를 선택한다면 피해자 보호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괴사건보도협정의 주체를 신문사 내의 기자, 편집인, 경영인 중 누가 담당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할 소지가 있다. 특히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유괴사건 보도유보와 피해자 생명의 구제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면 보도협정을 실제로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언론의 보도에 준하는 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행하는 범위에서 상식적인 실행관행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예에서 본 바대로 보도방침에 대한 협정을 도입하여 수사당국이 보도협정체결이 있을 경우 모든 기관의 합의나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출입기자들의 선에서 일체의 취재활동을 삼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협정이 기자협회 사이에 체결된 동안에는 각 출입기자나 기자단은 본사의 판단을 구하고, 본사의 동의를 있을 경우엔 본 협정 체결의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편집협회와 정식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가협정은 긴급협정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단시일에 필요한 수속을 보완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유괴사건의 보도유보 및 진행은 피해자의 인명구제라는 목적을 위해서 관련기관이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 1) 일본신문협회, 신문연구(1984. 6).
- 2) 지자산행충, 신문연구(1970. 3). 임리강, 신문연구(1950. 6), 일본신문협회.
- 3)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직업윤리(1987. 11. 30).
- 4) Donald M. Gillmor & Jerome A. Barren, Mass Communication Law (Cases and Comment, Third-Edition, West Publishing Co. 1979. 12).

- 5) Perry C. Cotham, "The Ethis of Escapism versus the Ethis of Involvement", Christian Social Ethis, Cotham, Perry Co. (ed). Baker Book House, Grand Rapid, Michigan, 1979, pp. 9-20,
- 6) Ken Macrorie, "Objectionity : Dead or Alive", Journalism Quarterly 36 (Spring 1959)
- 7) "Mass Media Ethis and Chistian Values", Christian Social Ethis, Cotham, Perry Co (ed.)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chigan (1979) pp. 151~167.
- 8) Oguz B. Nayman, Professional Ocentations of Journalists : An Introduction to Communicator Analysis Studies, Gazette 19 (No .4) 1973.
- 9) 유일상, 공정보도의 사회윤리학(일월서각 1987. 11).
- 10) 한병구, 언론법제이론(나남 1987).
- 11) 유기천, 형법학각론 (일조각 1985).
- 12)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84).
- 13) 강구진, 형법학강의 각론(상) (박영사 1984).
- 14) 노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리론 (법문사 1984).
- 15) 원우현, 한국미디어 문화비평 (나남, 1987)
- 16) 원우현, 현대미디어이론 (나남, 1988).
- 17) 원우현, 매스미디어와 문화발전 (범우사, 1984).

- 서울대학교 법학과, 미국 보스톤대학교 대학원(신문학박사)
- 저술 :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전파와 문화」 (공저), 「유언비어론」 (편저), 「설득커뮤니케이션」 (공역), 「여론원리」 (역서), 「여론선전론」, 「현대미디어 이론」 외
- 현재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